건축 · 대수선 · 용도변경 (변경) 허가 신청서

| • 어두운 난(|)은 신청인이 | 작성하지 | 않으며, | []에는 해 | 당하는 곳 | 근에 √ 표시를 | 합니다. | | | (6쪽 중 제1쪽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허가번호(연도-기 | 관코드-업무구- | 분-허가일련빈 | <u>년</u> 호) | | 접수일자 | | | 처리일자 | | |
| | r 1÷ | | T ÷ | - 1 - II | - | | - г | 1 0171 | | 1 = 1 4 1 1 |
| 건축구분 | [] 신축 | | 증축 | [] 개 | | [] 재축 | i [|] 이전 | _ |] 대수선 |
| | [] 허가/ | 나항 변경 | | []용 | 도변경 | | [|] 가설간 | 축물 | 건축 |
| | 성명(법인명 | 병) | | | | 생년월일(/ | 나업자 또 | 는 법인등 | 등록번 | 호) |
| | 주소 | | | | | | (전 | 회번호: | |) |
| 0 J-T | | | 사법」 제1 등의합니다 | | 정보통신 | · 망을 이용한 | · 각종 부 | 담금 부과 | 사전통 | 통지 등의 문서 |
| ① 건축주 | 전자우편 | | [] | 동의함 | | | [] | 동의하지 | 않음 | |
| | 송달동의 | | | | | | 건축주 | | | (서명 또는 인) |
| | | 전자우편 | 주소 | | | | @ | | | |
| | 성명(법인명 | 병) | | (4104 | FF 01) | 자격번호 | | | | |
| ② 설계자 | 사무소명 | | | (서명 | 또는 인) | 신고번호 | | | | |
| | 사무소 주: | <u></u> 소 | | | | | (전 | 회번호: | |) |
| | 대지위치 | | | | | | , | | | |
| | | | | | | 71747111 | | | | |
| ③ 대지조건 | 지번 | | | | | 관련지번 | | | | |
| ③ 대시조신 | 지목 | | | | 용도지역 | | | | | |
| | 용도지구 / | | | | 용도구역 / | | | | | |
| • 대수선의 경우 | | | | | 하여 층별 | 별 개요와 동법 | 별 개요의 | (주)구조기 | ㅏ 변경 | 되는 경우에는 |
| 변경되는 (주) - • 건축구분에 관계 | | | | | | | | | | |
| I. 전체 개. | റ | | | | | | | | | |
| 대지면적 | <u></u> | | | | 건축면 | 적 | | | | |
| 건폐율 | | | | m² | 연면적 | 합계 | | | | m² |
| 연면적 합계(용 | 정륙 산정용 | 2) | | % | 용적률 | <u> </u> | | | | m² |
| | | ,, | T -1- | m² | 0 12 | | | 1 ÷ D | | % |
| ④ 건축물 명경 | 징 | | 주 건축 | 岩 仝 | | 동 | 부속 건 | | 동 | m² |
| ⑤ 주용도 | | | 세대/호 | /가구수 | | 세대 호 | 총 주치 | | | |
| | | | | | | 가구 | | | | 대 |
| 주택을 포함하 | 는 경우 세디 | 배/가구/호발 | 별 평균 건 | 전용면적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m² |

|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구분 옥 | - | S | 즉외 | | | 용량 | | | (인용) |
|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구분 옥 | - | ڃ | 2 OI | | | | | | |
| | | | 누지 | | C | 인근 | 전 | 기자동차 | 면제 |
| 주차장 자주식 대 | m² | 대 | | m² | 대 | m² | 옥니 | | EII. |
| 기계식 대 | m² | 대 | | m² | 대 | m² | 옥요 인근 | | 대 |
| 공개 공지 면적 조경 ㎡ | 면적 | | m² | 건축 | 선 후퇴 | 면적 | m² | 건축선 후퇴 | |
| []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| | | | [] |] 결합건 | 축협정을 <i>쳐</i> | | 한 건축물 | |
| 변경사항 ※ 유의사항: 허가사 | 항을 변경 | 하려는 경5 | 우에만 | 그 나 | 용을 간르 | ᅣ하게 적습니 | 다. | | |
| [] 공사용 가설 [] 도시·군계호 [] 농지전용허. [] 비관리청 도 [] 개인하수처. [] 자가용전기설 [] 대기오염물결 [] 가축분뇨 바 [] 도시공원 점 [] 수산자원보. ** 유의사항: 「건축법 | 지설사 (가・신고 로로공사 리시설 (설비 공사 질 배출시 제출시설 범용허가 호구역 (| 법 시행자 및 협의 시행 허 설치신고 계획 인기 1설 설치 설치 허 | 자의 지 가 및 가・신 허가 가・신 | 기정 기 전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| 및 실시 사도개설 로의 연결 배수설비 [] 고 [] | 변하가 열하가 설치신고 수질오염될 소음·진원 공원구역 특정토양의 초지전용 | - 물질 동 배 행위 오염; 허기 | 산지일시] 도로점 (] 하천점 (] 상수도 배출시설 설 출시설 설 허가 관리대상시 나・신고 | 용허가·신고, 사용 허가신고 용허가 용허가 공급신청 설치 허가·신고 치 허가·신고 |
| 존치기간 년 | 월 | 일까지 | (기설 | 건축물 | 물 건축허기 | 가인 경우만 | 적습 | 니다) | |
|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| 년 | | | | | | | | |

「건축법」 제11조・제16조・제19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(변경)허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건축주 (서명 또는 인)

Ⅱ. 동별 개요

※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.

| 기존 건축물 | 의 동별 개요 | 구 분 | 허가신청 건 | 축물의 동별 개요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[] 주 건축물 [] 부속 건축물 | | 주/부속구분 | [] 주 건축물 | [] 부속 건축물 |
| | | ⑦ 동 명칭 및 번호 | | |
| | | 주용도 | | |
| 호 | | ※ ⑧ 호수 | 호 | |
| 가구 | 세대 | ※ ⑨ 가구/세대수 | 가구 | 세대 |
| [] 철근콘트리트조 [|] 철골조 [] 기타 | 주구조 | [] 철근콘트리트조 | [] 철골조 [] 기타 |
| | | ⑩ 세부구조 | | |
| | | 지붕 | | |
| | | ⑪ 지붕 마감재료 | | |
| | | ※ 건축면적(m²) | | |
| | | ※ 연면적(m²) | | |
| | | ※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(m²) | | |
| 지하: 층 | 지상: 층 | 층수 | 지하: 층 | 지상: 층 |
| | | 높이(m) | | |
| | | 승용승강기 | | |
| | | 비상용승강기 | | |
| 보•차양길이: | m | 특수구조 건축물 | 보•차양길이: | m |
| 기둥과 기둥사이: 내력벽과 내력벽사이: | m m | 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) | 기둥과 기둥사이: 내력벽과 내력벽사(| m ol: m |
| | | ※ ⑫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| | 111 |

Ⅲ. 층별 개요

• 동 명칭 및 번호 (①과 동일하게 적습니다)

|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| | | 구 분 | |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|
| 13 구조 | 14) 용도 | 15 면적(m²) | 층구분 | 건축구분 | 16 구조 | ⑪ 용도 | ® 면적(m²)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- | | | | | | | | |

IV. 대수선 개요

| • 대수선을 하려는 항목에 √를 표시하시고 | 증설 • 해체 • 수선 또는 |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
| | [] 내력벽 증설 · 해체 · 수선 · 변경 [m²] | |
|--------|---|--|
| | [] 기둥 증설・해체・수선・변경 [개] | |
| | [] 보 증설・해체・수선・변경 [개] | |
| | [] 지붕틀 증설・해체・수선・변경 [개] | |
| | [] 방화벽 증설・해체・수선・변경 | |
| 대소서 내용 | [] 방화구획 증설・해체・수선・변경 | |
| 대수선 내용 | [] 주계단 증설・해체・수선・변경 | |
| | [] 피난계단 증설・해체・수선・변경 | |
| | [] 특별피난계단 증설・해체・수선・변경 | |
| | []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・해체 ・수선 ・변경 | |
| | []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• 해체 • 수선 • 변경 | |
| | [] 건축물의 외벽 <u>중설</u> ・해체 ・수선 ・변경 [m²] | |

※ 준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

| 기존 | 건축물의 유형병 | 별 개요 |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⑪ 유형 | ② 실/호/세대수 | ② 실/호/세대별 면적(m²) | ② 유형 | ② 실/호/세대수 | ② 실/호/세대별 면적(m²)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※ 다가구주택 호(가구)별 면적

| 기존 | 건축물의 유형병 | 별 개요 |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호(가구) 구분 | 층구분 | ②호(가구)별 전용면적(m²) | 호(가구) 구분 | 층구분 | 26 호(가구)별 전용면적(m²)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첨부서류 및 허가권자 확인사항

- 가.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
- 나.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1)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
- 2)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3)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 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을 증명하는 서류
- 다. 「건축법」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- 라. 「건축법」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
-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대수선 및 가설건축 물의 건축
- 1)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: 공유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,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 다만,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.
- 2)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- 3)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- 4) 해당 건축물의 개요
- 마.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(「건축법」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 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바.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표 2의 설계도서(「건축법」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). 다만,「건축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하며,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사. 「건축법」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- 아.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
- 2.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
- 3. 용도변경
- 가.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
- 나.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・방화・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
- ※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평면도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「건축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- 4. 허가권자 확인사항
- 가. 제1호나목: 토지등기사항증명서
- 나. 제3호: 건축물대장 또는 「건축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 확인

| 허가안내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|--|--|--|
| 제출하는 곳 |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차시ㆍ특별자차도ㆍ 시ㆍ군ㆍ구 | 처리부서 | 건축허가 부서 | | | | |
| 수수료 |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참조 | 처리기간 | 특별시・광역시: 40일 ~ 50일 특별자치시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: 2일~15일(도지사 시전승인대상: 70일) | | | | |
| 「건축법」 근거규정 | | | | | | | |

| | 「건축법」 근거규정 |
|----------|---|
| 제11조 제1항 | 1.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. 다만, 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됩니다. 2.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[공장,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친 건축물(초고층 건축물은 제외)은 제외합니다]의 건축(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. |
| 제16조 제1항 |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|
| 제19조 제2항 | 용도변경(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) |
| 제20조 제1한 | 도시・구계회시선 또는 도시・구계회시석예전지에 가석거축묵은 거축하려는 경우 |

유의사항

1.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. 가.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(신설·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: 3년)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 우

「건축법」 제11조, 제19조, 제 80조, 제108조 및

제110조

- 나. 가목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다.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 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2.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·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,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
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, 위반건축 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
- 가.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경우
- 나.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
- 다. 허가받지 않고 기설건축물을 건축한 경우

작성방법

- 1. ①•②: 해당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"○○○외 인"으로 적고, "외 ○인"의 현황도 제출합니다. 아울러,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,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.
- 2. ③: 지번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되, 여러 필지인 경우 "지번"란에 대표지번을 적고, "관련 지번"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・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・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- 3. ④ : 건축물(단독주택 제외)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(예: 쌍둥이빌딩, ○○아파트).
- 4. ⑤ :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("주상복합"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).
- 5. ⑥ :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(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),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.
- 6. ⑦ :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. (예 : 101동, A동 등)
- 7. ⑧ ⑨ ⑩ ⑫ ⑫ 앱: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"호수",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"기구수",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"세대수"를 적고, 고시원의 구획 수는 "실수"를 적습니다.
- 8. ① : 세부구조 유형(단일 형강구조, 철골철근콘크리트 합성구조, 공업화 박판 강구조(PEB), 경량철골구조, 트러스구조, 기타)을 적으며,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.
- 9. ① : 지붕 마감재료(RC슬래브, 복합자재, 금속판, 유리, 기와, 기타)를 적습니다.
- 10. ① 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을 적으며, 건축물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.

| |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
| 1.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(PEB)인 건축물 | 2. 주요구조부가 강관입체트러스(스페이스프레임)인 건축물 |
| 3. 주요구조부가 막 구조인 건축물 | 4.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구조인 건축물 |
| 5. 주요구조부가 부유식구조인 건축물 | 6.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|
| 7.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•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| 8. 기타 |

- 11. 🔞 🖄 : 「주택법시행령」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.
- 12. ② · ② :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/호/세대별 면적을,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(「주택법시행규칙」 제2조)을 적습니다.

13. (13) ~ (24)

작성례 1)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㎡의 단독주택(다가구주택)을 철근콘크리트조로,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㎡의 단독 주택(다가구주택)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

|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| | | 구분 | | 허가신청 층별 개요 | | |
|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구조 | 용도 | 면적(m²) | 층구분 | 건축구분 | 구조 | 용도 | 면적(m²) |
| | | | 지1 | 신축 | 철근콘크리트조 | 단독주택(다가구) | 100 |
| | | | 1 | 신축 | 조적조 | 단독주택(다가구) | 100 |

작성례 2) 기존건축물(5층)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㎡이고,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(사무소) 100㎡를 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로 용도변경하고, 6층에 숙박시설(여관) 150㎡를 증축하려는 경우

| 기 | 존 건축물 층별 개요 | | 구 | 분 | 허가신청 층별 개요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구조 | 용도 | | 층구분 | 건축구분 | 구조 | 용도 | 면적(m²) | |
| 철근콘크리트조 | 업무시설(사무소) | 무소) 100 | | 용도변경 | 철근콘크리트조 | 제2종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 | 100 | |
| | | | 6 | 증축 | 철근콘크리트조 | 숙박시설(여관) | 150 | |

작성례 3) 기존 건축물(3층)의 연면적이 400㎡ 이고,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 150㎡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

| | | | , – | | _ | | ,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| | | | 구 | 분 | 허가신청 층별 개요 | | | |
| | 구조 용도 | | 면적(m²) | 층구분 | 건축구분 | 구조 용도 | | 면적(m²) | |
| | 철근콘크리트조 |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 | 150 | 1 | 대수선 | 철근콘크리트조 | 제2종근린생활시설(사무소) | 150 | |

작성례 4) 준주택(오피스텔) 호별 면적 25m²-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주택) 전용면적 30m²-13세대를 건축(용도변경 포함)하려는 경우

※ 준주택 ·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

| 기존 | 건축물의 유형별 | 개요 |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| | |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유 형 | 실/호/세대수 | 실/호/세대별 면적(m²) | 유 형 | 실/호/세대수 | 실/호/세대별 면적(m²) | |
| | | | 준주택(오피스텔) | 10 | 25 | |
| | | | 도시형생활주택(원룸형주택) | 13 | 30 | |

14. 🖏 • 🖄 : 「주택법시행규칙」 제2조제1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호(가구)별 주거전용면적을 적습니다.

| 처리절차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신청서 작성 | \rightarrow | 접 수 | $\bigg] \to \bigg[$ | 검 토 (협 의) | $\bigg] \to $ | 결 재 | $\bigg] \to \bigg $ | 허가서 작성 | $\bigg] \rightarrow$ | 허가서 교부 |
| 신청인(건축주) | 신청인(건축주)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(건축허가 부서) | | | | | | | | | 신청인(건축주) |